

# 힐스테이트 탐색 일반공급(가점제) 제출서류 안내문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 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후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직계비속	·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점수 산정한 경우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직계존속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 모 집공고(2022.06.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건분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탐색 일반공급(추첨제) 제출서류 안내문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 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첫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 모 집공고(2022.06.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상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탐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출서류 안내문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호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2022.06.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재혼, 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 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	재녀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녀	· 미성년 재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인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재녀	· 재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차 대리 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호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직계존속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 모집공고 (2022.06.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원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산산정기준표	-	· [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대리인 신청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 (2022.06.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재혼 배우자와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 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하는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건본주택 비치] 비사업자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 유형			구분	2021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 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자 추가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추첨제 신청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견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소유자 (인터넷등기소)
		○	재산세 납부현황		· 부동산 소유자 (위택스)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 건축물 소유자 (위택스)
		○	토지 표준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조회 결과	해당자	· 토지 소유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	농지원부		· 「농지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행정복지센터)
		○	축산업 허가증		· 「축산업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지자체 축산과)
		○	토지이용계획서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이음)
	○	중중재산목록 또는 규약 또는 총회결의서	· 중중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생년,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 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직장 ②,③ 세무서	
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또는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에 한함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판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 비치) ②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사실증명서(신고소득사실 없음)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탐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출서류 안내문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 (2022.06.17)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부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또는 25년 이상) 장기 복부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군 복무 기간 명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	· [건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서(부,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신청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제외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 초과 ~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 초과, 부동산가액 (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신청자 추가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추첨제 신청자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 소유자 (인터넷등기소)
		○	재산세 납부현황		· 부동산 소유자 (위택스)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 건축물 소유자 (위택스)
		○	토지 표준지 또는 개별 공시지가 조회 결과		· 토지 소유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	농지원부	해당자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행정복지센터)
		○	축산업 허가증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지자체 축산교)
		○	토지이용계획서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이음)
	○	중증재산목록 또는 규약 또는 총회결의서		· 중증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내 당첨자 삭제 및 계약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③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 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직장 ②,③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또는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에 한함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위 내용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 비치) ② 전년도 1월1일부터 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서류 제출 및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통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사실증명서(신고소득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 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 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 환급 및 없는 경우)	· 세무서 · 해당 직장 · 해당 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전체 포함" 및 "상세" 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적격여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은 관련법규를 요약한 것으로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